

## 8. 서울시 共同住宅 地下駐車場 分讓價 調整

根據：住企 30411-1209

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상의 표준건축비 조정(93. 2. 8)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상 설치의무  
화된 지하층 이외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.

가. 적용대상지역 : 서울시 행정구역

나. 시행일 및 적용대상 : '93. 5. 1.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

다. 조정내용

구 분	조 정 전	조 정 후	비 고
국민주택규모(전용85m <sup>2</sup> )이하	평당 92만원	평당 96만원	
국민주택규모(전용85m <sup>2</sup> )초과	평당 97만원	평당 101만원	